



시 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426호 2020. 2. 5.(수)

공 고

- 목포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조례 재정안 입법예고 ----- 2
- 목포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8

회람							
----	--	--	--	--	--	--	--

발행 : 목포시 편집 : 공보과 ☎ 061-270-8539

목포시 공고 제 2020 - 49호

「목포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목포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2월 5일

목 포 시 장

1. 제정이유

- 상위법령「지방자치법」제116조의2에 따라 목포시의 주요 정책과 현안 등의 자문 및 제안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목포시 정책자문단의 구성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능(안 제2조)
- 구성(안 제3조)
- 임기(안 제4조)
- 분과위원회(안 제6조)
- 회의(안 제7조)
- 수당(안 제10조)

3.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4. 조례(안) : 붙임

5. 예고기간 : 2020. 2. 5. ~ 2020. 2. 25.(21일간)

6. 의견제출

이 조례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 2. 25.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목포시장(참조 : 기획예산과장)에게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라. 제출서식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목포시 기획예산과 (목포시 양을로 203 우. 58613)
전화 061)270-8335, FAX 061)270-3578, E-mail mslee123@korea.kr

7. 기 타

자세한 내용은 목포시청 홈페이지(<http://www.mokpo.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 조 례 명 : 목포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건	비 고

목포시 조례 제 호

목포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6조의2에 따라 목포시의 주요 정책과 현안 등의 자문 및 제안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목포시 정책자문단의 구성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목포시 정책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제안에 응한다.

1.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 중심 서남권 중·장기 발전 계획에 관한 사항
2. 시의 시정 발전과제 발굴 및 정책대안 제시에 관한 사항
3. 전문적 대응이 필요한 현안사업 및 국책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단장 1인과 부단장 1인을 포함한 위촉직 위원으로 35인 이내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해당 소관 분야 실·국·소장 및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② 자문단의 단장은 시장이 지명하고 부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구성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대학교, 연구기관 등에 종사하거나 국가공인 전문기술 자격을 취득한 각 분야의 전문가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정부투자·출연기관 등의 전·현직 관계 전문가로서 지역의 중장기 발전 사업 협력이 가능한 사람
3. 직능단체, 사회단체 등 지역사회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식견을 갖춘 사람
4. 그 밖에 해당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이나 기타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장기간 회의불참 등 그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위원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
4.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제5조(단장의 직무 등)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분과위원회) ① 자문단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에너지경제
2. 관광문화
3. 해양수산
4. 도시환경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필요할 경우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를 동시에 개최할 수 있다.
- ③ 소관 분과위원장은 소관부서 실·국·소장으로 한다.

제7조(회의) ① 자문단의 회의는 단장이 소집하고,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정책자문이 필요할 시에 개최한다.
- ③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과 기획예산과장과 협의하여 자문이 필요한 해당 업무 실·과장이 개최한다.
- ④ 긴급한 자문이 필요하거나 특정 분야에 한정된 사안, 경미한 사안 등의 경우 서면, 방문, 전자우편 등을 활용하여 각 위원에게 수시 자문 할 수 있다.

제8조(간사와 서기) ①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 ② 자문단 간사는 담당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업무 담당자가 된다. 다만, 분과위원회의 경우 분과별 선임 주무팀장이 간사가 되고 서기는 선임부서 담당자가 된다.

제9조(공청회 등) ① 자문단은 제2조의 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나 법령이나 조례에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토론회·세미나·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시민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토론회·세미나·공청회 등을 개최할 경우 자문단 활동을 포함한 필요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자료제출 및 협조요청) ① 자문단은 안전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에

게 회의 출석 및 의견제시, 관련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비밀누설금지) 위원은 직무로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수당 등) ① 자문단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목포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시장이 주요 현안 정책에 대해 자문을 의뢰하여 제출받은 보고서나 논문형태의 정책연구과제물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책자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포시 공고 제2020 - 154 호

입 법 예 고

『목포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2. 5.

목 포 시 장

1. 개정 이유

- 2019년 단체협약 사항으로 직원들의 역사문화탐방 활동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치법규에 명시하여 직원의 후생복지 향상 및 행정의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직원 역사문화탐방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10조의 3)

3. 개정 조례안 : 별도 첨부

4. 신·구조문 대비표 : 별도 첨부

5.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77조(능률증진을 위한 사항)

6. 관련부서 의견

- 성별영향분석평가(여성가족과) : 해당사항 없음

7. 규제심사(심의) 대상 여부 검토 : 해당사항 없음

8. 예산상황 : 549,000천원(1830명*300천원)

9. 입법예고

○ 기 간 : 2020. 2. 5.(수) ~ 2. 26.(수) / 21일간

10. 사전협의(승인) 사항 : 해당사항 없음

11. 기타 참고사항

○ 2019년 단체협약서 제65조(역사문화탐방 활동비 지원)

12.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목포시장(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우530-701, 전남 목포시 양일로 203 목포시청(자치행정과)]

13.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http://www.mokpo.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목포시청 자치행정과(☎ 061-270-3428, FAX 270-87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시 조례 제 호

목포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직원 역사문화탐방 활동 지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예산이 확보되는 시점부터 적용한다.

제2조(준비행위)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준비행위는 이 조례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조의3(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 5. (생략) <u><신설></u> 6. (생략)	제10조의3(후생복지사업의 시행) - ----- -----. 1. ~ 5. (현행과 같음) <u>6. 직원 역사문화탐방 활동 지원</u> <u>7. (현행 제6호와 같음)</u>

관계 법령 및 참고 사항

□ 지방공무원법

제77조(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휴양·안전·후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 2019년 단체협약서

제65조(역사문화탐방 활동비 지원) ① 시는 조합원의 국내 문화유적지 탐방을 통한 우리역사 바로알기와 올바른 역사의식 정립을 위한 역사문화탐방 활동비를 1인당 30만원 이내에서 할 수 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목포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항목별 내용	찬성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